

제 16 호
(1997. 9. 10)

淳昌趙氏宗報

淳昌趙氏大宗會

☎☎☎☎ - ☎☎☎☎ 서울 · 瑞草區 瑞草洞 1712-2
東龍빌딩 503號

連絡處
會長 593-5353, 8383
FAX 593-8383

發行人
趙 鏞 樂

送金口座
국민은행 079-21-0442-691 조용락
농 형 013-02-136312 조용락
우 체 국 013-284-0008954 조용락



墓地制度의 改善

副會長 趙 宗 混

1. 머리말

좁은 국토가 묘지에 잠식되고 있다.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명당을 찾아 조상의 묘를 쓰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산야가 묘지로 뒤덮혀 있다. 매년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8평방km)의 묘소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국적으로 10년정도 지나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묘지는 982평방km로 남한 면적의 약 1%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6배 크기다. '65년말 전국의 분묘는 1961 만기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20만기씩 늘어나는 셈이다.

2. 분묘지권의 폐지

한국에서는 특수하게 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온 분묘지권(墳墓基地權)이란 것이 있다. 타인의 토지에 사절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20년이 경과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지권이 인정되어서 토지 소유자도 함부로 그 분묘를 철거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하지도 않은 분묘지권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제한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분묘지권을 포함한 전통적인 매장 제도는 산림개간 나이가 국토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한국과 같이 근대화를 촉진시켜야 할 사회실정하에서 지나치게 전통적인 관습에 집착되어 있다면 사회발전은 커녕 오히려 정체(停滯)만이 가중되어 더욱더 곤란한 문제가 생길뿐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평분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묘지 이외의 장소에 매장함을 엄격히 금지하여 산야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화장률(火葬率)도 99%에 달하고 있는바(천황을 제외한 전국민이 화장한다) 한국과 같이 관습이라고 하여 분묘지권을 인정해서 온 산림(山林)이 묘지로 뒤덮혀 있는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1993년 7월에 입법 예고했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판례에 의한 분묘지권의 성립을 폐제하고 있는바 그 중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안 제18조

① 공설묘지 및 장묘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있어서의 개별묘지 사용기간은 계약에 의하

여 정하되 처음의 기본사용기간은 50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안 제24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및 유골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묘지의 설치자 및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 매장자 또는 연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3) 개정안 제25조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분묘는 이를 연고자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 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를 정리하여 그 유골을 공·시설 납골 시설에 안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의 안치 기간 및 그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개정안 제26조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보존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주장하거나 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

-끝-
(송현파 증손)

'97 定期理事會 盛了

1997년도 정기 이사회가 지난 4월 27일(일) 평택시 서단면 奈川里 대종가(曉民美術館)정원에서 대종회 이사 및 평택과 종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으며 회의, 시작전에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과 선조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날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묘소참배 : 종친 100여명이 관판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종가에서 8km 떨어져 있는 화성군 양감면 용소리 소재 18세 梁奎公(司憲府執義), 19세 一韓公(左承旨), 21세 嵩公(同知中樞府事)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으며 평택과 대묘대의원 趙仁基로부터 선조의 업적과 유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조상숭배 정신을 돈독히 하였다.

2. 회의개최 : 조용락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대종회 사무실 마련기금을 찬조한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였고 조홍식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주소록 정비등 공지사향 전달이 있었으며 이어서 조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각파대향 노래자랑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3. 호민미술관 관람 : 대종가 지하실에 전시되어 있는 서예 및 미술품에 관한 관람을 하며 대종회장으로부터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웅장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 장기자랑을 하며 여흥을 즐겼다.

4. 감사패 등 수여자 명단

공로패 趙德善 전회장

감사패 趙炳舜 고 문

趙昌善 부 회장

趙炳路 문화부장

平昌黨派宗中

趙炳萬 고 문

趙洪植 부회장

趙泰東 이 사

鐵川派宗中

趙殷相 고 문

趙宗浚 부회장

趙泰堯 이 사

淸州派宗中

趙永秀 고 문

趙文勇 감 사

趙永喜(문경파)

趙鑄日 부 회장

趙燦基 재부부장

趙永應(문경파)

5. 노래자랑 수상자 명단

최우수상 : 평택과 조용규

은 상 : 원홍과 조구식

우 수 상 : 삼고과 조명식

동 상 : 삼고과 조창주

금 상 : 탐동과 조태용 부부

(수석부회장 조홍식 제공)



분회 趙俊相고문 逝去

분회 趙俊相 고문께서 1997년 8월 11일 서거(逝去) 하셔서 여주군 가남면 선영에 안장되었다. 趙고문은 분회 창립 이래 대종회운영에 지도적 역할을 하여 주셨고, 특히 족보 발간의 기초가 될 서문을 한글 번역하셨다.

회원 동정

■ 喪事

회간 : 趙泰東(성종파) 1997.4.6

결혼 : 趙瑋奎(예천파) 장녀 1997.4.27

趙用圭(예천파) 사남 1997.5.25

■ 職場

趙洪湜(수석부회장) : 동선물산주식회사 총무이사 부임

趙根植(사무국장) : 천은민속관광주식회사

영업담당이사 부임

趙영희(문경파) : 현대건설 이사 취임

趙永基(평택파) : 한국기술훈발(주) 감리부 상무 취임

■ 住所變更

趙秉植(단양파) : 경기도 하남시 덕동2동 365-29

趙鍾蓮(소암파) : 대구시 남구 봉덕1동 961-59

(T. 053-474-6884)

趙春植(원송파) :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34-10

趙永基(평택파) : 경기도 고양시 일신구 대화동 잠성

마을건영3 302-801호(T. 0344-719-3840)

趙燦圭(예천파) : 대구시 수성구 중동 411-10 광영

맨션B-1510(T.053-761-0648)

趙永福(문경파) : 서울시 미포구 망원2동 415-19

趙正식(갑산파) :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동 771-7

(T. 0581-52-0486)

趙춘식(갑산파)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265

뉴글든터은14-301(T.0331-42-8645)

趙병국(여주파) :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관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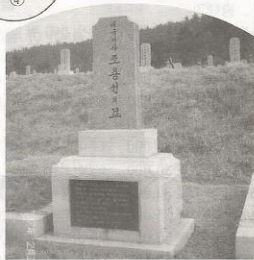
107-2202(T. 0344-911-2219)

特輯

遺蹟探訪

④

愛國志士 趙龍善公의 業績



문경파(聞慶派) 26세 趙龍善公(족보상 瑤善)은 1995년 6월 23일 대전 국립묘지 제2 애국지사 묘역(묘지번호 440)에 안장되었다.

公은 1894년경 경북 문경에서 출생하여 청년시절부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던중 1919년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단에서 입단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고 사재를 털어 수원등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1920년 수원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대구 복심법원(현·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옥중생활을 하였고, 그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 조병옥 박사 와 친교를 맺고 자주독립과 광복을 위해 몸바쳤고 자유당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안성군 민주당 위원장을 역임하여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으로서 향년 88세에 경기도 남양주군 남면 신산리 장남의 자택에서 서거하시어 문경군 문경면 마원리 백화산 정상에 안장되었던 중 1990년 정부에서 독립운동 옥중기록을 발견하여 전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고 애국지사로 등재하여 1995년 6월에 대전 국립묘지 제2 애국지사 묘역으로 안장하였으니 이는 우리 순창조계 문중의 근대사의 영광이며 칠충신의 후손다운 자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애국지사 조용선의 비문에는 "무릇 나라가 위기에 처함에 국민된 자의 도리로서 구국에 일평생을 바쳤 다하여 어찌 장한 일이라 말하리오.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음이 지당한 일이거늘 자량스러울 일도 부끄러울 일도 없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음.

(事務局長(문경파) 趙根植 提供)

一般會費納入現況

1. 평택파

조항기(평택) ₩ 30,000	조용상(평택) ₩ 30,000
조용기(평택) ₩ 30,000	조용호(평택) ₩ 50,000
조순기(평택) ₩ 30,000	조봉기(평택) ₩ 10,000
조평기(평택) ₩ 30,000	조병희(평택) ₩ 10,000
조용섭(평택) ₩ 30,000	조용만(평택) ₩ 10,000
조승호(평택) ₩ 30,000	조용대(평택) ₩ 30,000
조철기(평택) ₩ 30,000	조병열(평택) ₩ 30,000
조병기(평택) ₩ 30,000	조호연(평택) ₩ 30,000
조병환(평택) ₩ 35,000	조용석(평택) ₩ 50,000
조용운(평택) ₩ 50,000	조병헌(평택) ₩ 30,000
조용안(평택) ₩ 50,000	조병권(평택) ₩ 30,000
조병관(평택) ₩ 50,000	조용원(평택) ₩ 50,000
조상기(평택) ₩ 30,000	조선기(평택) ₩ 50,000
조용주(평택) ₩ 30,000	조병걸(평택) ₩ 30,000
조용국(평택) ₩ 30,000	조성주(평택) ₩ 30,000
조우기(평택) ₩ 30,000	조병언(평택) ₩ 30,000
조병택(평택) ₩ 30,000	조병목(평택) ₩ 30,000
조용희(평택) ₩ 50,000	조원주(평택) ₩ 30,000
조계만(평택) ₩ 30,000	조문기(평택) ₩ 30,000
조용주(평택) ₩ 30,000	조용정(평택) ₩ 30,000
조병근(평택) ₩ 10,000	조원주(평택) ₩ 30,000
조병필(평택) ₩ 30,000	조용태(평택) ₩ 50,000
조용설(평택) ₩ 30,000	조병대(평택) ₩ 30,000
조문주(평택) ₩ 30,000	조병호(평택) ₩ 30,000
조왕기(평택) ₩ 50,000	조정기(평택) ₩ 30,000
조인기(평택) ₩ 80,000	조용환(평택) ₩ 30,000
	합계 : 1,735,000,000

2. 기성파

조보선(기성) ₩ 10,000	조창선(기성) ₩ 10,000
조인선(기성) ₩ 10,000	조덕섭(기성) ₩ 30,000
조태성(기성) ₩ 30,000	조창선(기성) ₩ 30,000
조태수(기성) ₩ 30,000	조태규(기성) ₩ 30,000
조태원(기성) ₩ 30,000	조철선(기성) ₩ 50,000
조태영(기성) ₩ 50,000	조태일(기성) ₩ 50,000
조태인(기성) ₩ 50,000	조태영(기성) ₩ 50,000
조태국(기성) ₩ 50,000	조태식(기성) ₩ 20,000
조태명(기성) ₩ 20,000	조태연(기성) ₩ 20,000

조태룡(기성) ₩ 10,000	조태근(기성) ₩ 10,000
조태진(기성) ₩ 10,000	조태석(기성) ₩ 20,000
조연식(기성) ₩ 10,000	조태진(기성) ₩ 10,000
조광선(기성) ₩ 50,000	조태복(기성) ₩ 50,000
	합계 : 740,000

3. 지평파

조병택(지평) ₩ 10,000	조병기(지평) ₩ 10,000
조병국(지평) ₩ 10,000	조병욱(지평) ₩ 10,000
조병남(지평) ₩ 10,000	조병세(지평) ₩ 10,000
조병호(지평) ₩ 10,000	
	합계 : 70,000

4. 기타

조성식(청주) ₩ 45,000	조병로(여주) ₩ 50,000
조광주(삼고) ₩ 100,000	조봉주(갑산) ₩ 40,000
형단양과 ₩ 20,000	조영운(문경) ₩ 20,000
조태형 ₩ 50,000	
	합계 : 325,000

基金贊助金納入現況

(누계분)

조용락 회 장 ₩4,000,000	조병순 고 문 ₩3,000,000
조병만 고 문 ₩ 500,000	조영수 고 문 ₩1,000,000
조홍식 수석부회장 ₩500,000	조창선 부 회 장 ₩1,500,000
조용일 부회장 ₩1,000,000	조홍식 부 회 장 ₩1,000,000
조종식 부회장 ₩1,000,000	조태일 부 회 장 ₩1,000,000
조한기 재무부장 ₩500,000	조병로 문화부장 ₩1,000,000
조태동 이 사 ₩1,000,000	조영기(평택파) ₩1,000,000
조차선(전천파) ₩ 200,000	조강선(전천파) ₩ 200,000
조일선(전천파) ₩ 200,000	평택파 ₩2,000,000
팔승과 ₩ 500,000	가주파 ₩ 500,000
원충과 ₩ 500,000	
	합계 : ₩22,100,000

회원주소록 제출드려

'96년 12월에 대총회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는 각파 회원주소록 정리준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파가 있어 홍보발송 및 증친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각파 대표대의 원들께서는 오는 9월 31일까지 주소록을 필히 작성하여 대총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